발신번호 등록 위수탁 계약서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임사  (발신번호 명의자) | 발신번호 | 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 | 상호 |  |
| 사업장 주소 |  | | |
| 담당자명 |  | 담당자 연락처 |  |
| 수임사  (문자발송 대행사) | 아이디 | 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 | 상호 |  |
| 사업장 주소 |  | | |
| 담당자명 |  | 담당자 연락처 |  |

※ 위임사와 수임사 각 담당자 정보(이름, 연락처)는 발신번호 등록 서류 제출 시, 첨부하는 신분증(+재직증명서)과 일치해야 합니다.

본 발신번호 명의자(이하 ‘위임사’)는 문자발송 대행사(이하 ‘수임사’)와 홍보/광고/공지/안내목적의 문자 발송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는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(와이즈캔 SMS 서비스 이용 신청 시점 부터 서비스 이용 종료 시 까지)

이에 위임사는 수임사가 위임사의 발신번호 ( )를 홍보/광고/공지/안내 문자 발송 목적으로 와이즈캔 (http://biz.wisecan.com/)에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문자 발송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등록 신청한 발신번호는 위임사 명의의 발신 번호임을 증명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발신번호 명의자 (위임사)  상호 : (인) | 문자발송 대행사 (수임사)  상호 : (인) |

20 년 월 일

발신번호 사전 등록 및 유의사항

발신번호 사전 등록이란?
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 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.

와이즈캔 문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"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'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제84조의2 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

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• 협박 •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복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﻿﻿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을 복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﻿﻿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﻿﻿﻿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 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2. ﻿﻿﻿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3. ﻿﻿﻿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4. ﻿﻿﻿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 •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.

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2. ﻿﻿﻿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3. ﻿﻿﻿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
﻿﻿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﻿﻿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,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 체적인 절차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⑦ ﻿﻿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• 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64조, 제64조의 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
\* 문자발송 대행사는 발신번호 등록 전 해당 번호가 기업 또는 기관 및 그에 속한 임직원이 보유한 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등록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문자발송 대행사를 지정한 발신번호 명의자에게 있습니다.